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이름 사용 제한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438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이름 사용 제한	2
2. 관계기관 의견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1. 20.

(3) 회 부 일 :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 성명으로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성장 과정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부적절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Ⅲ. 검토의견

1.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이름 사용 제한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시·읍·면의 장은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의 세부적인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시·읍·면의 장은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④ (생략)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u>제4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5항</u> ----- ----- -----.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¹⁾에 따르면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등이 기재하여야 하며,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23. 7. 18.>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한편, 같은 법 제99조²⁾에 따르면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명의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어 놀림감이 되는 경우 개명허가를 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출생신고시 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 당시 해당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녀의 성명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비속어 등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3) 법원에서 개명이 이루어진 사례로는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이창년, 권분필, 소총각, 나대장, 방기생 등 [대법원 소식지 ‘법원사람들’ 봄호(2014년 3월호)]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기준 정립이 어려워 신고 수리 또는 수리 거부 과정에서 행정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는 출생의 신고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는 아동이 태어난 즉시 국가의 공적 장부에 등록되어 법적 인격체로 인정받고, 부모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생등록될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⁴⁾, 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을 이유로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아동의 권리 보장 측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⁵⁾에 따르면 시·읍·면·

4)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 장은 신고서류 접수 시 지체 없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고서류 등을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통념상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를 자녀의 이름에 사용하는 것이 신고사건을 불수리할 무효사유가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①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재된 호적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출생신고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고,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 문구를 포함하는 이름일 경우 수리거부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출생신고 불수리는 헌법상 기본권(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을 제한하는 법률이 갖추어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큰 측면이 있어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